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9-13

대 전 고 등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4누36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	[redacted]주식회사
피고, 피항소인	1. [redacted]세무서장
	2. [redacted]시장
제 1 심 판 결	대전지방법원 2014. 6. 11. 선고 2012구합3820 판결
변 론 종 결	2015. 3. 26.
판 결 선 고	2015. 4. 30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에 대하여, 별지 법인세/지방소득세 고지내역 기재와 같이, 피고 서산세무서장이 2011. 4. 5.에 한 법인(원천)세 6,880,988,210원, 2011. 12. 2.에 한 법인(원천)세 28,579,304,31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서산시장이 2011. 5. 9.에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9-13

한 지방소득세 688,098,820원, 2011. 12. 12.에 한 지방소득세 591,811,370원, 2012. 1. 9.에 한 지방소득세 2,266,119,0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3행 "2008두 전원합의체 판결"을 "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"로 고치고, 제12면 제1행 마지막 부분의 "설립 등시"를 "설립 당시"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승훈

판사 김진선

판사 장민석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9-13

별지

법인세/지방소득세 고지내역

(단위: 원)

배당일	2006-04-19	2006-12-29	2007-05-16	2008-04-16	2009-04-23	2010-04-30	합계
배당액	68,844,304,302	59,210,742,396	30,445,226,860	67,337,675,230	4,353,193,830	124,589,173,070	354,780,315,688
[redacted]세무서장 원천징수법인세 고지일자	2011-04-05	2011-12-02	2011-12-02	2011-12-02	2011-12-02	2011-12-02	합계
법인세액	6,880,988,210	5,918,113,700	3,043,000,420	6,730,400,630	435,101,720	12,452,687,840	35,460,292,520
[redacted]시장 지방소득 고지일자	2011-05-09	2011-12-12	2012-01-09	2012-01-09	2012-01-09	2012-01-09	합계
지방소득세액	688,098,820	591,811,370	304,300,040	673,040,060	43,510,170	1,245,268,780	3,546,029,240